

# 지쿱 회원 등록 신청서



## 유의사항

-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기재된 약관내용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법인 등은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 상에 기재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지쿱(주)는 회원등록, 회원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회원탈퇴 또는 자격 해지 시까지 보관합니다.

회원     소비자

<b>신청인 정보</b> Applicant Information	국문 이름 Korean Name	영문 이름 English Name	캠퍼스명 Campus
	휴대폰 번호 Mobile Number	전화번호 Phone Number	※휴대폰 SMS 문자 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이메일 주소 E-mail		※이메일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우편번호 Zip Code
은행명 Bank Name		계좌번호 Bank Account	

<b>후원인 정보</b> Supporter Information	후원인 이름 Supporter Name	<b>추천인 정보</b> Enroller Information	추천인 이름 Enroller Name
	회원 번호 Account Number		회원 번호 Account Number

<b>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b>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b>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b>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b>마케팅 보상플랜변경에 대한 고지(통지)사항</b>	마케팅 보상플랜 변경 고지(통지)방법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알림톡, 회사의 정기간행물, 별도의 우편물 등을 통한 고지(통지) 방법에 동의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b>판매원수첩, 판매원등록증 구매계약서의 전자문서 발급에 관한 안내사항</b>	다단계판매원 수첩, 다단계판매원등록증, 구매계약서의 발급 방법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다단계판매원 수첩, 다단계판매원등록증, 구매계약서를 전자문서로의 발급 및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발급 안내를 받는데 동의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b>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b>	다단계 판매원 가입관련하여 방문판매 법 15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뒷면 회원계약 조건 참조)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다단계 판매원 가입 관련하여 방문판매 법 15조 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신청인이 작성한 위의 내용은 사실이며, 신청인이 자의로 작성하였고 본 문서 뒷면에 기재된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Year                      Month                      Date                      Applicant                      Signature

지쿱(주) 대표이사 **서정훈**



지쿱(주)

본사 전라북도 남원시 밤티재길 16-12(광치동) **반쯤쳐**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옹투산로 254

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7(구로동) 지쿱(주) 6층 / Tel : 02-555-6009 / Fax : 0505-300-6009 / Email : gc@gcoop.com / Home page : www.gcoop.com

## 회원 계약조건

### \* 판매원 정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나 이메일로 송부된 정보는 판매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전달 된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시 지쿰(주)에 신속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판매원 등록

지쿰(주)에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등을 기재하고 사명날인 등)를 신청서나 전자문서(지쿰(주)에 제출하여 함)나, 등록신청서 판매원 가입비 또는 상품 구매의무 등에 대한 금전적 부담도 없습니다.

### \* 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2. 법인 또는 회사
  3. 지쿰(주)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1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등록 당시 만 19세 미만인 자
  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7. 등록당시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8. 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거나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는 제외)
-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판매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판매원으로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판매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 \* 판매원 자격 취득

신청은 지쿰(주)가 등록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판매원 수첩, 판매원 안내서 및 기타 사항을 교부한 후에 한하여 자신이 판매원으로 인정될 것을 속차하십시오.

### \* 규정 준수

신청인은 판매원 활동을 함에 있어 지쿰(주)의 모든 내부 규칙, 규정, 방침 및 절차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 \* 금자취위

- 지쿰(주)의 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 취소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우위를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주문을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월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3.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금, 가맹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아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판매원에게 하위인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장려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지급 기준에 규정된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5.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장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상대편의 청약이 없는에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상품구매를 강요하거나 하위인 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8. 상대편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판매원이 사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인 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판매원이 그 하위인 판매원에게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또는 연수 등을 강요하는 행위
  11. 판매원을 지쿰(주)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3. 다단계판매자가 상대편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14. 본인의 허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① 재화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② 재화의 구매에 따른 대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도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④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자유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자유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임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 판매원 탈퇴

탈퇴를 원하는 판매원은 탈퇴신청서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사는 탈퇴 시 아무런 조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 판매원 자격 해지

지쿰(주)는 판매원이 관련 법률이나 지쿰(주)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판매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해당 판매원이 판매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지쿰(주)로부터 위반 통지를 수령한 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쿰(주)는 판매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 계약 해지 시 해당 판매원은 계약 해지 시까지 달성한 자위를 상실합니다.

### \* 후원수당의 고지

신청인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판매원들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에 관한 정보와 기타 지쿰(주)의 후원수당 제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청약철회 등

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은 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 소비자 환불(반품)규정

1. 소비자(등록 판매원 포함)는 소비자 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 소비자원(전화 : 02-3460-30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판매원이 지쿰(주)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 제16조,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위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지쿰(주)의 등록판매원은 소비자의 반품 요구(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하여 즉각 응해야 하며, 상품을 반환받은 다음 상품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철회 등을 하고 등록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쿰(주)에게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원이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개월이 경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을 공제합니다.

### \* 반환시의 비용공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0%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5%,
  -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 회사는 청약철회와 반품 시 본건으로 본인이 수령한 수당과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 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1. 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한다.
  -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구매계약에 판매원구매인지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한다. 공제금 지급 한도가 다르다.
  - 판매원 :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 소비자 :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
3.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정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발거래이며,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4.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구매계약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6.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
7. 통상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8. 누구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www.kossa.or.kr) 및 02-2058-0831-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 신청서

• 회원 이름 |

• 회원 번호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탈퇴요청일 |

년

월

일

• 철회사유 |

상기본인은 년 월 일 자로 지쿰 회원을 탈퇴합니다.

지쿰(주) 귀하

■ 당사는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의무의 불이행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의 개인정보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